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기준 마련〉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86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6.

3. 회부연월일 : 2025. 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국가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합니다.

학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인데, 법안에 누락됐습니다.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실, 다목적 교실 등 공용공간 부족으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교사는 수업 준비 공간이 부족합니다.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국가에 학교 단위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실현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선을 위하여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의 상한과----- -----.

현행 「교육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4조3항),

개정안은 국가가 ‘학교급당 적정 학생수’ 기준 외에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수의 상한’도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4조는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교의 설치, 학생 배치계획의 수립 등도 교육감의 권한 사무임¹⁾.

따라서 현행법령 상 학교의 규모(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인 점을 입법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인구 분포, 학령인구, 학교시설, 통학 환경 등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규모 상한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의 학교급별 또는 학교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수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신·증축 등을 통한 교실 확충, 교원 수급, 학생 분산 배치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등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에 따른 재정소요 및 교원수급계획²⁾, 학교용지 확보 가능성

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학생배치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참고로, 교육부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2023.4.)”에 따르면 매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감소할 예정이다.

< 2024~2027년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안) >

및 학령인구의 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교육부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다만 학교당 학생 수의 상한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부합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학교급	학년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초등	학생 수(천 명)	2,539	2,423	2,268	2,131	1,976
	신규채용 교원 수	3,561	3,200~2,900명 내외		2,900~2,6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14.4명)	15.4	14.8	13.9	13.2	12.4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20.3명)	21.1	20.0	18.6	17.3	15.9
중등	학생 수(천 명)	1,857	1,880	1,908	1,868	1,841
	신규채용 교원 수	4,898	4,500~4,000명 내외		4,000~3,500명 내외	
	교사 1인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 평균 13.6명)	11.8	12.1	12.4	12.3	12.3
	학급당 학생 수 (‘20년 기준 OECD(중학교) 평균 22.6명)	25.0	25.2	25.5	24.8	24.4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실제 인력 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학급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감률을 반영한 추계 ※ OECD 통계에서는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산출하지 않음

(출처: 교육부,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2023.4.)

<참고자료>

<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 현황('24.4월 기준)>

시도	초			중			고			계		
	전체	과대	비율	전체	과대	비율	전체	과대	비율	전체	과대	비율
서울	609	14	2.3%	390	8	2.1%	318	8	2.5%	1,317	30	2.3%
부산	304	-	-	170	-	-	142	-	-	616	-	-
대구	242	3	1.2%	128	-	0.0%	96	-	-	466	3	0.6%
인천	264	5	1.9%	144	2	1.4%	127	1	0.8%	535	8	1.5%
대전	153	1	0.7%	89	-	-	62	-	-	304	1	0.3%
울산	121	4	3.3%	64	1	1.6%	57	-	-	242	5	2.1%
세종	53	13	25%	27	1	4%	21	-	-	101	14	14%
경기	1,334	15	1%	661	11	2%	490	7	1%	2,485	33	1%
강원	364	-	-	160	-	-	115	-	-	639	-	-
충북	267	15	5.6%	130	2	1.5%	86	2	2.3%	483	19	3.9%
충남	424	5	1.2%	186	1	0.5%	118	8	6.8%	728	14	1.9%
전북	417	-	-	210	-	-	133	-	-	760	-	-
전남	466	1	0.2%	256	-	-	144	-	-	866	1	0.1%
경북	490	1	0.2%	262	1	0.4%	183	-	-	935	2	0.2%
경남	524	55	10.5%	268	7	2.6%	198	4	2.0%	990	66	6.7%
제주	114	5	4.4%	45	3	6.7%	30	4	13.3%	189	12	6.3%
계	6,146	137	2.2%	3,190	37	1.2%	2,320	34	1.5%	11,656	208	1.8%

※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연도별·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

(연도별 4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25.3	24.7	24.0	23.4	23.0	22.8	22.3	22.1	21.9
초	22.4	22.3	22.3	22.2	21.8	21.5	21.1	20.7	20.0
중	27.4	26.4	25.7	25.1	25.2	25.4	25.0	24.6	24.5
고	29.3	28.2	26.2	24.5	23.4	23.0	22.6	22.9	23.4

<지역유형별 학생 수 현황('24.4월 기준)>

구분	학교당 학급수(학급)			학교당 학생 수(명)			학급당 학생 수(명)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전체(평균)	19.9	16.5	23.5	419.0	411.4	530.6	21.1	25.0	22.6
대도시	27.1	20.6	27.1	583.5	507.6	604.9	21.5	24.6	22.3
중소도시	26.1	21.7	27.3	607.6	590.7	646.8	23.3	27.2	23.7
읍지역	18.6	14.9	17.3	388.2	361.3	371.6	20.9	24.2	21.5
면지역	8.1	5.6	11.1	99.3	93.0	219.3	12.2	16.8	19.7
도서벽지	5.1	4.6	7.9	40.4	65.4	131.6	8.0	14.2	16.7

< 시도교육청별 학급당 학생 수 현황('24.4월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초	중	고	전체	초	중	고	전체
전체(평균)	20.7	24.6	22.9	22.1	20.0	24.5	23.4	21.9
서울	21.3	23.8	23.0	22.3	20.8	23.8	23.7	22.3
부산	21.5	24.6	20.7	22.0	20.9	24.4	21.1	21.8
대구	22.0	23.5	22.3	22.5	21.7	24.8	22.8	22.7
인천	21.5	25.8	23.0	22.8	21.3	26.2	23.5	22.9
광주	20.5	23.9	23.8	22.1	19.8	23.6	24.0	21.7
대전	19.9	23.9	21.3	21.2	19.5	24.0	21.5	21.0
울산	21.3	24.9	22.9	22.5	20.9	24.9	23.6	22.5
세종	19.8	23.6	22.9	21.2	19.8	23.9	23.5	21.5
경기	23.2	27.3	24.9	24.5	21.8	26.9	25.5	23.9
강원	16.5	22.7	21.4	18.9	16.0	22.6	21.4	18.7
충북	19.2	23.1	22.9	20.9	18.4	22.9	23.1	20.5
충남	18.4	24.6	23.6	20.9	17.9	24.2	24.0	20.7
전북	17.0	22.4	21.3	19.2	16.2	22.2	21.5	18.8
전남	16.4	21.7	19.8	18.3	15.7	21.5	19.9	18.0
경북	19.1	21.2	20.3	19.9	18.4	21.2	20.6	19.6
경남	19.8	24.2	22.7	21.5	19.2	24.1	22.9	21.2
제주	21.3	25.4	25.4	23.1	20.6	25.2	25.7	22.8

<OECD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구 분	교원 1인당 학생 수(명)			학급당 학생 수(명)*	
	초	중	고	초	중
한 국	16.6	13.0	11.4	23.1	26.1
OECD	14.5	13.1	13.0	21.1	23.3

* OECD 기준상 고등학교 단계 미산출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제외

※ OECD에서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지표는 변동성이 적다는 이유로 격년주기 발표로 결정('22.3.),이에 「OECD 교육지표 2023」에 '21년 기준 수치가 포함될 예정